

## < 임금 체불 안내문 >

□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(미지급, 지연지급 포함)

① <쟁점> <체불 된 기간의 문제>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⇒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(지연지급 포함)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인 경우 인정(1개월은 30일)

예시① 5.1. 임금을 7.1.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7.2.에 이직

예시② 5.1. 임금을 6.1.에, 6.1. 임금을 7.1.에 받고 7.2.에 이직

예시③ 지연지급 기간이 총 60일(2개월) 체불된 경우

② <쟁점> <체불 된 개월 수의 문제>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⇒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, 미지급된 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(지연지급은 해당)

예시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.1, 6.1.에 임금받지 못하고 6.2.에 퇴사한 경우(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인정)

③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이상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

예시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.1.에 임금의 7할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.3.에 이직한 경우

예시② 매월 1일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.1.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.2.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.3.에 이직한 경우

④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,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(연속)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인정

예시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.1, 6.1, 7.1, 8.1, 9.1, 10.1.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0.2.에 이직한 경우

예시②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.1, 6.1, 7.1, 8.1, 9.1, 10.1.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이직 전 임금 잔액을 모두 받았으나, 10.2.에 이직한 경우

☞ 제출서류: 임금대장(급여명세서), 임금체불확인서, 급여통장사본(이체내역) 등

